

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안 번호	8-48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정이유

-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목적 외에는 전용할 수 없음을 마련하고자 함.
- 『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』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특별회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

□ 주요내용

- 법령 및 시행령에서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하는 자는 폐기물시설설치 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. → 지급받은 금액은 별도의 계정(특별회계)을 통해 관리 하여야 함.

<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>

제6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(宅地)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내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.

<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시행령 >

제4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)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(宅地)"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(이하 이 조에서 "택지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② 법 제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"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(財源)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- 「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조례에서 지정된 회계목적에만 사용 가능함 ⇒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.

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(제3조) 세입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. 2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. 국·도비의 보조금 4.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

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(제4조) 세출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.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 3.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, 증축,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4.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5. 일반회계로의 전출금. 다만 제 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세입은 제외한다.

□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○ 입법예고 기간 : 2020. 9. 1. ~ 9. 21.(20일간)

□ 제정조례안 : 붙임1

□ 관련법령 발췌서 : 붙임2

□ 비용추계서 : 붙임3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4

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폐기물처리시설”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2. “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”이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세입)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
2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국·도비 보조금
4.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세출)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.

1.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
2.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
3.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, 증축,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
4.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
5. 일반회계로의 전출금. 다만, 제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세입은 제외한다.

제5조(전용금지)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.

제6조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)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제8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자원순환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자원순환과장 이 규 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자원시설팀장 이 갑 상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장 한 림 (행정 2239)

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-487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2월 7일

제안자 : 도시환경위원장

수정이유

-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중복 규정을 삭제 수정함.

주요골자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의 중복 규정을 삭제.(안 제4조제5호)

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□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(세출)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일반회계로의 전출금. 다만, <u>제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세입은 제외한다.</u></p>	<p>제4조(세출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원안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